

22 지식재산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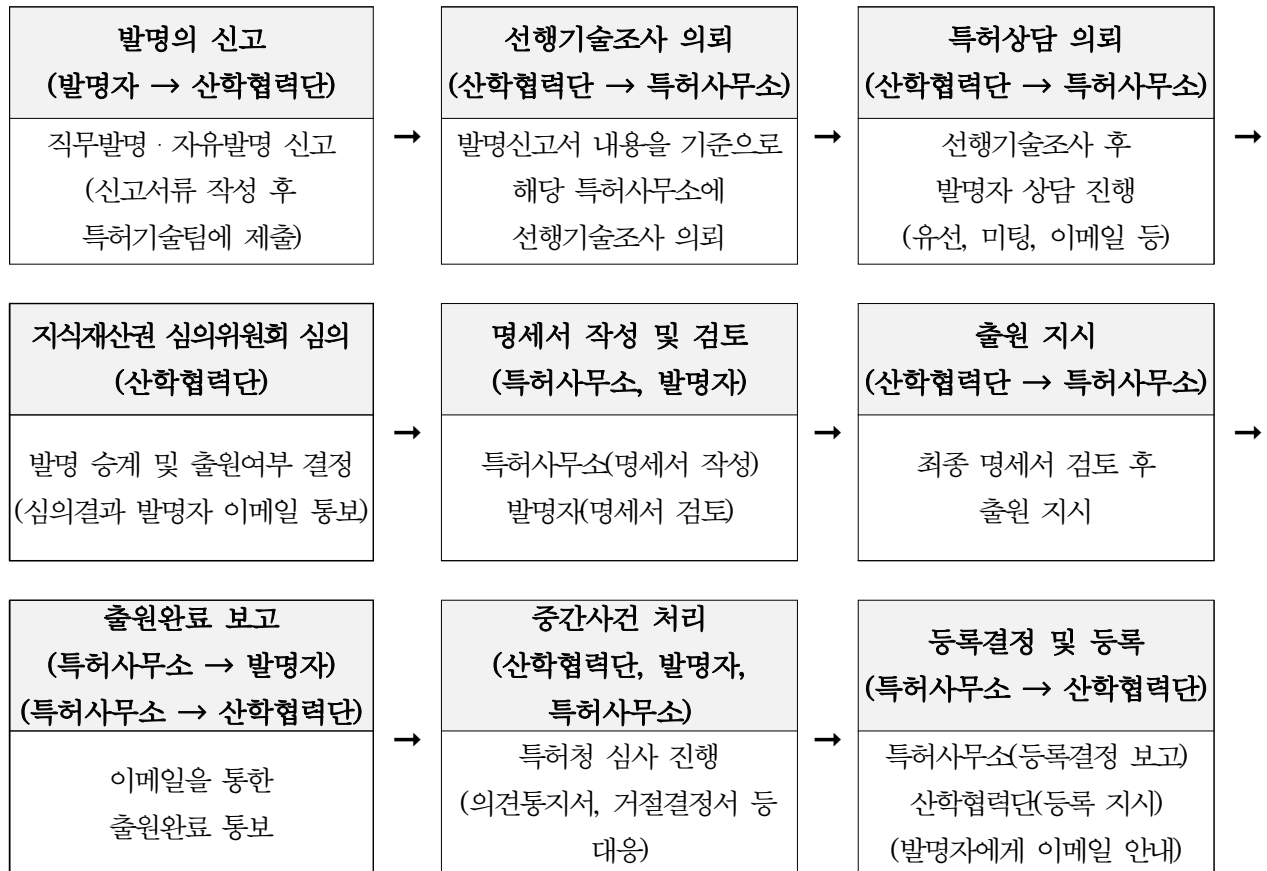
- 소관 : 산학협력단
- 주무 : 특허기술팀

1. 업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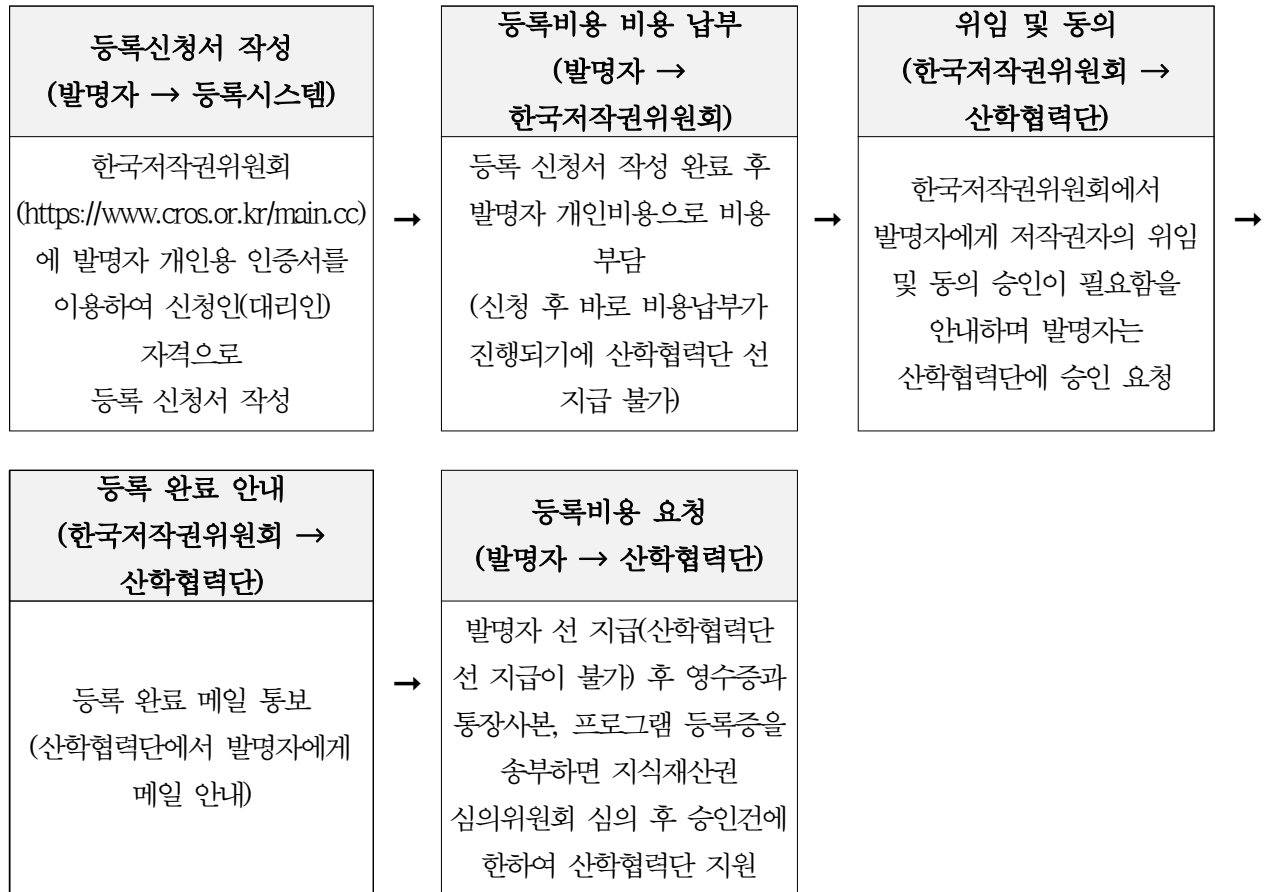
- 목적 : 한국교통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시기 : 연중
- 관련법령 또는 근거
 - 발명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이하 ‘지식재산권 규정’ 이라 함)
 -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함)
- 관련부서 : 전 부서

2. 업무흐름도

■ 특허 관리 업무



■ 프로그램, 기타 저작권 관리 업무



3. 주요내용

■ 업무 처리 세부 절차

- 직무발명 신고 의무(지식재산권 규정 제10조)
 -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직무발명신고서, 발명내용설명서, 양도증, 선행기술조사서
* 가
- 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지식재산권 규정 제12조)
 -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 결정하여야 함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체 없이 그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특허비용 부담(지식재산권 규정 제13조, 시행지침 제6조·제9조)
 - [원칙] 특허 취득을 위한 제비용은 전담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예외] 발명자가 비 전담특허사무소를 지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출원 전 심의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출원 가능

구 분		관련 절차
단독출원	연구과제 성과물이 아닌 경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승인 후 특허 출원 진행
	연구과제 성과물인 경우	[원칙] 해당 과제 연구비(성과활용지원비)에서 특허출원 제비용 부담 [예외]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내 성과활용지원비 계상이 불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특허 출원 1건은 필요 지원 사항 - 특허 출원 2건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공동출원		공동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공동출원인(기업 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내에서 출원비용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비로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비용은 공동출원인(기업 등) 부담 공동출원 계약 체결 시에는 지분율에 따라 지원
해외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매분기마다 발명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특허비용은 시행지침 제6조 [표1]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발명자가 일부 부담 가능

4. 업무처리 유의사항

■ 직무발명 권리승계(지식재산권 규정 제12조)

- 한국교통대학교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교원 업적평가 반영

- 특허는 출원인이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인 경우만 인정하며, 배점×인정 환산율을 점수로 부여하되, 각 구분에 대한 배점한도 적용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국제특허등록	200		인정환산율 : 1/n
국내특허등록	100		
실용신안, 의장, 소프트웨어	50	50점한도	

[참고 1]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제9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특허권은 산학협력단이 승계·소유한다. 단,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소유한다.

② 교직원등이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계약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발명의 신고의무) 교직원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발명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양도증(별지 제4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체 없이 그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특허취득 및 유지관리) 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하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발명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단, 제1항의 발명이 연구과제의 성과물인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연구비에서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 후문에 규정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또는 그 산하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의 특허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⑤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공동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취득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출원이 예상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의 생략) 직무발명의 출원·등록·계속보유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용역과제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여부 및 출원·등록·계속보유 여부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속보유의 포기) ① 등록 후 5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계속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포기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발명자에게 양도된 특허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실시료의 비율은 규정 다음과 같다.

1.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5를 지급한다.

제6조(외국 특허 출원비용 등의 지원) ① 외국 특허의 출원·등록·계속보유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매분기마다 사전에 신청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② 외국 특허 출원비용 및 지원액은 기술평가 결과 및 [표1]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표1] 직전 3년 간접비(산단분) + 기술료 입금액

계상기준 \ 지급기준	지급비율	연간지급한도 (천원)
1억이상 ~	5,000천원 X 100%	5,000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5,000천원 X 80%	4,000
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000천원 X 50%	2,500
5백만원이상~2천만원미만	5,000천원 X 30%	1,500
5백만원 미만	미지원	0

- ※ 출원비용, 의견서, 등록비용 등을 위 범위 내에서 지원
- ※ 기술성평가는 산단에서 별도로 의뢰
- ※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③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징계조치)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원회는 총장에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전담특허사무소의 이용) 특허의 출원, 중간사건, 등록 등의 비용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담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자가 전담특허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지정할 사유가 있을 때는 출원 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